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칙

제정 2015. 11. 19.

개정 2016. 09. 29.

개정 2019. 0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이고, 약칭은 “NAPI”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에 의거,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망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정보”라 함은 정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의 연구 및 업무와 관련된 지식정보자원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란 지식정보자원을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등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본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어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협의회의 주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정보 발굴 사업
2. 정책정보 DB구축 사업
3. 정책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용

4.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활용기반 마련
5. 정부조직 및 공공분야 도서관의 발전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6. 회원의 정보관리 능력 증진 교육
7.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8. 우수한 협력 회원에 대한 포상
9.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협의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 기관의 관련부서장 또는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의회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협의회 사업에 적극 협력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재) 회원이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배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자격 박탈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비상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1인
4. 운영위원 12인 이내(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

5. 자문위원 3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중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④임원의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
- ⑤임기는 정기총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새 임원이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 2.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후 이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일
- ④운영위원,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협의회 목적 위배, 업무 방해,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3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운영위원은 선출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위원은 정부조직,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소속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 부서장급 2인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주관기관에서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정기총회 전에 선출)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분과위원회 설치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운영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운영위원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장이 사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의 열람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총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대리) ①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회장 및 주관기관,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출석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장 기 구

제25조(설치와 조직) ①협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분과위원회

②제1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①협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제반 사업 집행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협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주관기관의 사무관이 된다.

③서기는 협회의 문서나 기록,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주관기관 주무관이 된다.

제7장 보 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이 통과 된 후 ‘협의회 설립을 위해 위촉된 준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대 임원으로 자동 전환 된다.

제3조(회칙 제정) 최초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9.10.14.>

이 회칙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